행 정 안 전 부

개 선 요 구

제　　목 사업실적이 저조한 건설공사공제사업 재검토 필요

기 관 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관 계 부 서 ○○○○ ○○○

내　　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관」 제27조에 따라 ‘영조물 또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공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판단기준(관계법령 등)

「건설공사손해공제규정」 제2조에 따르면 ‘건설공제’란 회원이 공공시설물의 건설을 위해 발주한 건설공사의 관리하자 등으로 건설공사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사업으로서, 공제회는 건설공제사업에 대해 주기적으로 가입현황, 사업실적 등을 점검하여 존치 여부, 사업구조 조정, 활성화 방안 등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2. 관계사실

공제회는 건설공사 손해공제 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2017. 7. 5. 행정안전부

사전 협의, 2017. 7. 12. 공제회 운영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2017. 7. 12. 「건설공사손해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건설공사손해공제' 상품을 출시하였다.

이후 공제회는 2018. 9. 13. '건설공사 공제 활성화 방안 검토 보고[1]'를 통해 2018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시설공사 11.8조 원 중 예상 손해보험료는 236억 원 상당으로 2018년 하반기 발주예정인 '200억 원 이상 공사' 중 공제회 건설공사 공제 가입 유치시 예상 공제회비는 18.6억 원 정도라고 시장규모를 분석하였으며,

'가입 활성화 제한사항'으로 가입대상 공사가 대부분 임의가입이므로 공사보험에 대한 관심이 낮고, 소형·중형 공사는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계상·반영하지 않아 미가입하는 경우가 많고, 회원이 발주자 가입방식보다 시공자 가입방식으로 가입하는 기존 방식을 선호하여 가입 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검토한 바 있다.

이에 회원 사고사례 조사 및 전파, 홍보 리플렛 추가 배부, 공제회 임원진 현장경영 방문시 홍보, 안내공문 지속 발송 등 내용의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그러나 공제회에서 마련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그대로 시행한다 하더라도 대형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직접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는 '발주자 가입방식'보다 총공사비 한도 내에서 시공자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시공자 가입방식'을 선호할 수 밖에 없고, 시공자는 공사 이행보증 등 타 연계상품도 판매하는 건설공제조합의 건설공사공제를 가입하거나 시공자의 계열 보험회사 보험을 가입하는 방식을 선호할 수 밖에 없으며,

---

1) 공제회 ○○○○-○○○(2018. 9. 17.), 이사장 결재

소형·중형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 발주기관에서는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정가격 산정시 손해보험료를 공사 예정가격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2018. 9월경 검토되었던 '가입 활성화 제한사항'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가입 제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공제회 건설공사공제 가입 실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선되기 어렵고, 실적 증대를 위한 대책 마련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 결과 공제회는 2017년 건설공제사업 도입 이후 감사일(2022. 2월) 현재까지 아래 [표]와 같이 저조한 실적[2017년~2021년 사이 계약 건수 23건(연평균 4.6건 / 공제회비 계 143,012천원(연평균 28,602천원)]을 유지하고 있다.

<표> 건설공사공제사업 도입 이후 가입 현황

연도별	계약건수 (건)	계약만료 (건)	계약유지 (건)	공제회비 (천원)	비고
계	23	22	1	143,012	
2017년	2	2	-	2,187	
2018년	6	6	-	24,981	
2019년	9	9	-	91,390	
2020년	4	4	-	19,037	
2021년	2	1	1	5,415	
2022년	-	-	-	-	

※ 자료 : 공제회 제출자료 재구성

3. 관계기관 의견

이에 대해 공제회에서는 건설공사공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 관련 법규 개정과 회원(행안부, 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도 제고를 통해 가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향후에도 계속 가입실적이 저조할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은

[개선] 가입실적이 저조한 건설공사공제사업에 대해 사업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행 정 안 전 부

개 선 요 구

제　　목　지방관공선 공제등록금액 평가표 조정 등 개선 필요

기 관 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관 계 부 서　○○○○ ○○

내　　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및 공제회「지방관공선재해복구공제규정」등에 따라 지방관공선[2] 재해복구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1. 판단기준(관계법령)

공제회「지방관공선재해복구공제규정」제7조에 따르면 회원은 선박의 장부가액(실건조 또는 구매가액) 또는 공인기관 및 공인감정사의 감정가액, 공제등록[3]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공제등록금액[4]을 정하여 등록 신청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방법으로 공제등록금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지방관공선공제등록금액평가규칙」의 공제등록금액의 평가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지방관공선공제등록금액평가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지방관공선의

---

2) 지방관공선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리권을 위임받아 보유하고 있는 선박

3) 공제등록 : 회원이 선박의 사고로 발생된 물적·비용 손해보상 및 승선자에 대한 배상을 보상받기 위해 공제가입하는 것

4) 공제등록금액 : 선박의 공제등록시에 회원이 신청한 공제가액으로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액

공제등록금액의 ‘산정단위’는 선체, 주기관, 보조기관 및 개개의 의장품으로 하고 지방관공선 ‘공제등록금액’은 별도의 ‘선체 공제등록금액 평가표’ 및 ‘기관 공제등록금액 평가표’에 의거 산정단위별로 사용년수에 따라 ‘시가체감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2. 관계사실

2022. 1월 말 현재「지방관공선공제등록금액평가규칙」을 살펴보면 공제등록금액 산정을 위해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선체 공제등록금액 평가표’ 및 ‘기관 공제등록금액 평가표’를 두고 있으나

<표-1> 선체 공제등록금액 평가표

구 분		톤 수	톤당 평가액(천원)
강선		-	8,631
목선	무 동 력	-	3,230
	동 력	3톤미만	4,017
		3톤이상 20톤미만	3,907
		20톤이상	3,466
F.R.P선 등	무 동 력	-	4,802
	동 력	3톤미만	8,187
		3톤이상 20톤미만	7,358
		20톤이상	6,390

※ 자료 : 공제회 제출자료 재구성

<표-2> 기관 공제등록금액 평가표

(단위 : 천원)

구분	종류	마력수	분당 회전수	마력당 평가액(국산)	마력당 평가액(외산)
주기관	디 젤	100HP 미만~1,000HP 이상	1,000 이하 1,000 초과	95~350	112~299
	선내기	150HP 미만	1,000 이하	-	145
			1,000 초과	-	129
	선외기	5HP 미만~100HP 이상	-	55~208	85~317
	박용외기관	100HP 미만~300HP 이상	-	54~75	54~75
보조기관	디 젤	100HP 미만~ 300HP 이상	-	58~80	84~150
	박용외기관	100HP 미만~300HP 이상	-	31~44	31~44

※ 자료 : 공제회 제출자료 재구성

2개의 평가표 모두 2012. 12. 20.에 개정한 평가표로서 개정 후 감사일(2022. 2. 21.) 현재까지 9년 1개월 동안 한번도 조정하지 않았다.

한편 2012. 12월 평가표를 개정한 사유를 보면 '○○○○ ○○○○'(○○○○○-○○○○호, 2012. 10. 4.)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관공선공제등록기준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적정한 공제등록금액으로 가입을 유도하고자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기존 기준금액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고 유사기관의 평가기준금액을 참조하여 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공제회는 물가상승률[5] 등을 감안하여 '공제등록금액 평가표'를 주기적으로 조정했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여, 사고 발생 시 회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현 시가 대비 적을[6]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치할 사항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은**

[개선] 지방관공선 공제등록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평가표를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5)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른 근원물가지수(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012년 12월은 89.574, 2022년 1월은 103.77로서 2012년 12월 '공제등록금액 평가표' 개정 후 물가상승률은 15.8%임

6) F.R.P 5톤 동력선(선령0) 디젤 300HP(국산 RPM 1000이하)을 가정할 때 평가표 기준 등록금액은 124,390천원(5톤×7,358천원+300HP×(238천원+54천원))이나 물가상승률 적용 시 144,044천원으로 19,654천원 차이 발생

행 정 안 전 부

주 의 요 구

제　　목 자산운용 관련 위원회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관 계 부 서 ○○○○, ○○○

내　　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금융자산운용규정」 및 「금융자산운용규칙」에 따라 자산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용을 위하여 ‘자산운용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리스크 및 성과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1. 판단기준(관계법령)

「금융자산운용규칙」 제5조, 제6조에 따르면 ‘자산운용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리스크 및 성과평가위원회’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외부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하여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기 위해 ‘직무윤리 사전 진단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다.

같은 규칙 제11조, 제14조, 제17조에 따르면 위원회 심의사항 및 보고사항 등은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 및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보관·관리하고, ‘투자심의위원회’와 ‘리스크 및 성과평가위원회’는 회의록을 이사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2. 관계사실

감사 대상기간(2018. 7월 이후) 동안 위원회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공제회는 2021. 12. 29. 자산운용위원 신규 선임계획을 수립하고 아래 [표]와 같이 5명의 외부위원을 자산운용위원회 신규 위원으로 선임하기로 확정하였다.

<표> 자산운용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현황

성명	소속	임기	비고
○○○	○○대표	2022. 1. 1. ~ 2024. 6. 30.	신규
○○○	○○○대표		
○○○	○○장		
○○○	○교수		
○○○	○○교수		유임

※ 자료 : 공제회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금융자산운용규칙」과 다르게 임기를 2년 6개월로 하였고, 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하여는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지 않았다.

또한 '자산운용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리스크 및 성과평가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은 하였으나, 위원장과 위원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지 않았으며, '투자심의위원회'와 '리스크 및 성과평가위원회' 회의록은 이사장에게 보고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은**

[주의]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자산운용 관련 위원회 운영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행 정 안 전 부

개 선 요 구

제　　목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직원 보직관리 개선 필요

기 관 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관 계 부 서 ○○○ ○○○

내　　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공제회「직원채용규칙」제3조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경력자 또는 임용예정 직무에 필요한 자격증 보유자를 대상으로 채용분야를 정하여 2015년 이후 2021. 12.까지 경력직(일반직·연구직) 직원 17명을 채용하였다.

1. 판단기준(관계법령 등)

공제회는 「인사규정」에 경력직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경우 그 직원에 대한 일정기간 전보를 제한하는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참고로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령」제45조에 따르면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경력이 일정기간 이상인 사람을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채용 한 경우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4년)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제회는 지방회계·지방계약·공제사업·옥외광고 등 분야의 전문기

관으로서 업무 전문성 및 연속성 강화를 위해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그 채용목적 달성을 위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임용령」에 준하여 필수보직기간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2. 관계사실

공제회는 2015년 이후 채용분야를 정하여 경력직으로 채용한 직원 17명 중 6명에 대해 최초에는 채용분야에 맞는 보직을 부여하였으나 아래 [표]와 같이 채용 후 1.5 ~ 3년 이내에 채용분야에 맞지 않는 다른 보직으로 전보 인사발령을 한 사실이 있다.

<표> 경력직 직원 채용 후 다른 보직으로 전보 발령한 현황

채용분야/직급	최초 보직일/ 최초 보직부서	타부서 전보일/ 보직부서	보직기간
통계관리/○급	2016. 1. 4. ○○○	2019. 1. 1. ○○○	36개월
연구교육/○급	2016. 12. 1. ○○○	2018. 7. 1. ○○○	19개월
통계관리/○급	2017. 3. 1. ○○○	2020. 1. 20. ○○○	35개월
통계관리/○급	2017. 3. 1. ○○○	2018. 7. 1. ○○○	16개월
연구교육/○급	2017. 3. 1. ○○○	2018. 7. 1. ○○○	16개월
광고기획/○급	2018. 11. 16. ○○○	2021. 7. 21. ○○○	32개월

※ 자료 : 공제회 제출자료 재구성

3. 관계기관 의견

이에 대해 공제회에서는 직원의 전보인사와 관련하여, 인사운영의 효율성, 공정성, 투명성이 저해됨이 없이 특정부서 장기근무에 따른 부패 위험성도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문직위제, 필수보직기간 등 공무원에 준하는 전문성 강화방안

의 도입을 검토하고, 적재적소 인력배치를 통한 기관의 전문성이 유지·강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은

[개선] 경력직 직원 채용목적 달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인사규정에 경력직 직원에 대한 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제한 관련 기준 등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행 정 안 전 부

통 보

제　　목 지방재정회관 공실 관리방안 마련 필요

기 관 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관 계 부 서 ○○○ ○○○○

내　　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공제회 소유 재산인 지방재정회관(이하 “재정회관”이라 한다)의 일부를 업무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필요 공간 외 부분은 타인에게 임대하여 재산의 적절한 보전과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1. 판단기준(관계법령 등)

공제회는 재정회관의 적절한 보전과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회관관리규칙」을 마련하고 있는데,

같은 규칙 제9조에 따르면 건물의 일부 또는 일정한 시설이나 장소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고 제10조에 따르면 주변시세, 지역별 임대 동향 및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관리비 등을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되 물가 또는 경제여건의 변동에 의하여 금액의 변경이 필요할 시 이사장 결재를 받아 재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주관부서는 재정회관 임대를 원활하게 하

고 임대 가용면적의 유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업무의 위탁, 홍보, 광고 등 임대촉진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공제회는 재정회관의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촉진, 임대료·관리비 조정, 환경개선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재정회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관계사실

공제회 임대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이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임대가용 면적(평균 14,415㎡)의 약 17%가 임대되지 못한 채 공실 상태로 있었다.

<표-1> 지방재정회관 임대관리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임대수입					지방재정회관					
	소계	수입 증감 (전년 대비)	임대료	관리비	주차료	평당 임대료 (원/월)	면적(㎡)				공실률 (평균 17%)
							소유	임대 가용면적 (평균 14,415)	임대계약 (평균 11,891)	공실 (평균 2,523)	
'18	3,212	611	1,740	1,410	62	42,000	22,173	14,939	11,999	2,940	19
'19	3,185	-27	1,733	1,396	56	42,000		14,939	11,954	2,985	20
'20	2,771	-414	1,640	1,079	52	42,000		14,288	11,374	2,914	20
'21	3,030	259	1,772	1,198	60	42,000		13,492	12,238	1,254	9

※ 자료 : 공제회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공제회 인근 임대빌딩의 임대료가 아래 [표-2]와 같이 재정회관 임대료(12,727원) 이상인 ㎡당 12,727원에서 17,878원 사이인데도 공실 없이 운영되고 있어, 공제회에서 홍보, 시설개선 등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면 공실률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실 면적(2021. 12. 31. 기준 1,254㎡) 임대

시 연간 191,515,896원[7]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2> 지방재정회관 주변 임대빌딩 현황

(단위: 원)

구분	재정회관	○○	○○○	○○
㎡당 임대료(월)	12,727	17,878	12,727	14,545
㎡당 관리비	7,575	10,000	8,181	9,575
공실현황	1,254㎡	없음	없음	없음

※ 자료 : 공제회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은**

[통보] 재정회관 임대공간 공실률 최소화를 위한 위탁·홍보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7) 1,254㎡(공실면적) × 12,727원(㎡당 임대료, 월기준) × 12개월 = 191,515,896원

행 정 안 전 부

통 보

제　　목 공용차량 임차계약 기간 변경으로 비용 절감 필요

기 관 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관 계 부 서 ○○○ ○○○○

내　　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2022. 2. 25. 현재 총 18대의 공용차량을 구매(4대) 또는 임차(14대)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다.

1. 판단기준(관계법령 등)

업무용 차량을 임차할 때에는 기관업무의 특성, 예산상황, 임차대상 차량용도, 차량운영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임차 조건을 정할 필요가 있다.

임차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차비용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승용차량의 내용연수, 차량 성능 및 안전성을 감안하여 임차 계약기간을 장기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8].

2. 관계사실

8)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 7. 16. 차량 임차기간을 최소 3년 이상으로 하도록 권고

공제회는 18대의 공용차량 중 14대를 아래 [표]와 같이 2년 기간으로 짧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공제회 공용차량 임차계약 내역 및 계약기간별 소요예산 현황

(단위 : 원)

차명	임차기간	2년 계약 시 (연간 소요비용)	3년 계약 시 (연간 소요비용)
합계	-	**92,844,000**	**80,364,000**
○○○○	2020.02.04. ~ 2022.02.03.(2년)	15,000,000	13,440,000
○○○(1)	2021.02.04. ~ 2023.02.03.(2년)	5,988,000	5,148,000
○○○(2)	2021.02.04. ~ 2023.02.03.(2년)	5,988,000	5,148,000
○○○(3)	2021.02.05. ~ 2023.02.04.(2년)	5,988,000	5,148,000
○○○(4)	2021.02.04. ~ 2023.02.03.(2년)	5,988,000	5,148,000
○○○(5)	2021.04.15. ~ 2023.04.14.(2년)	5,988,000	5,148,000
○○○(6)	2021.02.04. ~ 2023.02.03.(2년)	5,988,000	5,148,000
○○○(7)	2021.02.05. ~ 2023.02.04.(2년)	5,988,000	5,148,000
○○○(8)	2021.02.05. ~ 2023.02.04.(2년)	5,988,000	5,148,000
○○○(9)	2021.02.04. ~ 2023.02.03.(2년)	5,988,000	5,148,000
○○○(10)	2021.02.04. ~ 2023.02.03.(2년)	5,988,000	5,148,000
○○○(11)	2021.02.04. ~ 2023.02.03.(2년)	5,988,000	5,148,000
○○○(12)	2021.02.04. ~ 2023.02.03.(2년)	5,988,000	5,148,000
○○○(13)	2021.02.05. ~ 2023.02.04.(2년)	5,988,000	5,148,000

※ 자료 : 공제회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14대의 공용차량 임대차계약을 2년이 아닌 3년으로 일괄 체결하였다면 연간 임차 비용이 92,844,000원에서 80,364,000원으로 감소되어 연간 12,480,000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치할 사항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은**

[통보] 앞으로 공용차량 임차 계약기간을 장기(3년 이상)로 설정하는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행 정 안 전 부

개 선 요 구

제　　목 용역사업 기성·준공 검사 시 투입인력 등 확인 필요

기 관 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관 계 부 서 ○○○○, ○○○, ○○, ○○○

내　　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2019. 1. 1. 이후부터 2021. 12. 31.까지 용역 등 계약을 아래 [표-1]과 같이 체결하였다.

<표-1> 용역 등 계약체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약건수	총 계약금액
용역(연구, 일반, 정보화 등)	310	12,866
물품구매	13	261
공사	20	820
총계	343	13,947

※ 자료 : 공제회 제출자료 재구성

1. 판단기준(관계법령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르면 공사·제조·용역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4조에 따르면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

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 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고, 다만 이 경우 산출 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 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공제회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 기준으로 산출 내역서를 작성하고 용역수행을 위한 투입인력, 계약대상 증감 등의 변경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대해 투입인력 공백기간, 계약 대상 변경 시에는 용역계약 시 작성한 산출 내역서에 근거하여 변경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2. 관계사실

공제회는 계약관련 법령, 예규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내역서를 작성하고 기성·준공 검사 시 산출 내역서를 기준으로 용역수행을 위한 투입인력(연구원 등),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대상 장비 사용정지·폐기 등 변경유무에 대한 기성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2]와 같이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 등 10건의 용역계약의 경우 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지 않고서 기성·준공 검사 시 용역수행 결과를 적합으로 판정하고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금액을 전부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2> 산출 내역서 미작성 용역 계약현황

(단위 : 천원)

계약명	계약 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	458,387	'19.5.1.~'20.4.30.	㈜○
○○	367,438	'21.4.22.~'22.4.30.	㈜○○
○○○○	19,800	'19.10.24.~12.23.	○○○
○○○	18,000	'19.10.8.~12.21.	○○
○○용역	593,295	'20.8.1.~'21.7.31.	㈜○○
○○용역	264,116	'21.6.23.~'22.6.30.	㈜○○○
○○○용역	493,316	'21.6.30.~'22.6.30.	○○
○○○	27,000	'20.6.11.~10.10.	㈜○○○
○○	36,166	'20.7.1.~10.31.	○○
○○○용역	21,800	'20.9.11.~12.9.	㈜○○○○

※ 자료 : 공제회 제출자료 일부 발췌

이에 따라 용역사업 수행을 위한 투입인력(연구원 등)의 참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사업관리 및 예산 지출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져 예산을 낭비하게 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은**

[개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계약 및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행 정 안 전 부

주 의 요 구

제　　목 선금 보증서 징구 소홀

기 관 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관 계 부 서 ○○○ ○○○

내　　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2019. 1. 1. 이후부터 2021. 12. 31.까지 아래 [표-1]과 같이 ‘○○○’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였다.

<표-1> 선금 지급 현황

(단위 : 백만원)

대상 사업	총 계약금액	선금 지급금액
○○○ 등 22개	2,087	912

※ 자료 : 공제회 제출자료 재구성

1. 판단기준(관계법령 등)

「국고금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르면 공사, 제조 또는 용역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계약예규 제35조 제4항에 따르면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관계사실

공제회는 아래 [표-2]와 같이 '○○○○' 등 6건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선금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선금을 지급하였고, '○○○' 등 4건 계약의 경우 선금 보증기간이 계약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이 아니라 계약 종료일까지로 되어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선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2> 선금 보증서 징구 부적정 현황

(단위 : 백만원)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선금		비고
			보증기간	지급액(지급일)	
○○○	20	'19.11.26.~12.30.	-	14('19.11.27.)	보증서 미징구
○○	20	'19.11.26.~12.30.	-	14('19.11.27.)	
○	30	'19.11.26.~12.30.	-	14('19.11.27.)	
○○○○	30	'19.11.26.~12.30.	-	14('19.11.27.)	
○○	20	'20.8.21.~12.12.	-	14('20.9.23.)	
○○○	22	'21.11.4.~12.30.	-	7('21.12.8.)	
○○○○	21	'19.4.16.~7.15.	'19.5.2.~7.15.	9('19.5.9.)	60일 미가산
○○	19	'19.5.10.~8.7.	'19.6.12.~8.7.	9('19.6.12.)	
○○○	36	'20.7.1.~10.31.	'20.7.23.~10.31.	17('20.7.27.)	
○○	19	'21.4.28.~12.10.	'21.5.27.~12.10.	9('21.6.2.)	

※ 자료 : 공제회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은**

[주의]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선금 지급 시 선금 보증서 등 징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행 정 안 전 부

주 의 요 구

제　　목 **○○○○ 용역 하도급 승인업무 소홀**

기 관 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의대상자 ○○○　　차장(○○)　○○○

○○○　　대리(○○)　○○○

내　　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서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관리 등을 위해 아래 [표-1]과 같이 ○○○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 용역 계약현황

(단위 : 천원)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	’19.5.1. ~ ’21.4.30.	731,775	㈜○○○
○○○	’21.5.1. ~ ’23.4.30.	734,876	㈜○○○○

※ 자료 : 공제회 제출자료 재구성

차장(○○) ○○○은 2012. 4. 2.부터 감사일 현재(2022. 2. 21.)까지 ‘19년~’20년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용역 실무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대리(○○) ○○○은 2018. 7. 1.부터 감사일 현재(2022. 2. 21.)까지 ○○○ 용역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1. 판단기준(관계법령 등)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60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표준 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37조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와 하도급되는 부문의 세부 산출내역서,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등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지침 제38조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 등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물품 구매 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51조 제7항에 따르면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공제회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사업 추진 시 계약상대자에게 하

도급 계약 승인 절차를 안내하고 용역사업 착수 후 하도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며, 하도급 승인 및 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2. 관계사실

공제회에서 추진한 ○○○○의 하도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 용역의 계약상대자 ㈜○○○은 전체 과업(100%, 계약금액 731,775천원)에서 일부(17%, 123,286천원)를 타 업체(23개)가 수행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2개 사업에 총 42개의 하도급 업체가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2> ○○○ 용역 하도급 현황

(단위 : 천원)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하도급		
			업체	계약금액	비율
○○○○	731,775	㈜○○○	○○○ 등 23개	123,286	17%
○○○	734,876	㈜○○○○	○○○○ 등 19개	174,551	24%

※ 자료 : 공제회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용역사업 계약상대자인 ㈜○○○ 등 2개 업체는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를 공제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공제회는 용역사업 수행 월간보고서 등 사업산출물에 타 업체 직원이 투입된 사실이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적정성을 평가하거나 하도급 계약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은

[주의] 위 관련자를 주의 처분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 하도급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하도급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업체에 대해 적정성을 평가하여 승인 여부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